평창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등)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 01. 19(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0. 01. 28(목)

다. 상정일자 : 2010.01.28(목) 제1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가.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용평면 지역에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나. 용평면 장평리 산266-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A=43,870㎡)

나. 군계획시설 결정 : 체육시설 신설 (A=47,047㎡)

-축 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진입도로 신설 (L=587m, B=10m)

.

4. 검토결과

○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

평창군 용평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용평면 지역에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평리 산266-2번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43,87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군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강원도의 승인까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보완 또는 반려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 01. 19(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0. 01. 28(목)

다. 상정일자 : 2010.01.28(목) 제1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가. 평창 로하스파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여가활동의 양적 증가에 충족하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나. 평창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급화된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하여,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 255,266㎡(신설)

나. 군계획시설 결정

- 교통시설 : 도로신설 소로1류 (L=528m, B=10m)
- 방재시설 : 소하천(작은도사천) 폭원 5~10m, L=569m

4. 검토결과

○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

(주)로하스파크피에프브이(대표:유형석)가 용평면 도사리 산80번지 일원 255,266㎡에 2012년까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테마공원, 체육시설, 하수처리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을 보면

가. 도사리 69번지 일원의 생산관리지역 214,8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사리 산80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2,58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나. 용도지구를 로하스파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며,

다. 로하스파크 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함.

라. 군도 8호선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 로하스파크 조성지역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반영된 작은 도사천을 군계획시설인 소하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사계절 휴양관광을 지향하는 우리군에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관광휴양시설 임.
- 2009. 12월에 실시한 군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입안 자문의견인 오폐수처리계획 등은 사전에 미리 조정 보완하여 승인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 특히, 오폐수처리 문제는 평창강 상류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편입토지조서상 소유자로부터 95%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토지수용 협의에서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업체의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선행되는 등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협의가 필요 함.